

교수사회의 保守性과 派閥

柳初夏
(忠北大 哲學科)

1. 教授社會 派閥形成의 바탕과 목표

어떤 사회집단에나 파벌은 있게 마련이다. 파벌은 이해관계의 공유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교수사회에도 파벌은 있다. 그러나 교수집단에서 파벌을 일으키는 이해관계는 비교적 간접적·우회적인 색채를 띤다. 그리하여 일핏 보면 교수사회의 파벌은 권리·이익을 둘러싼 파당적 집단이 아니라 학문적 이론과 생활적 신조를 공유하는 동지적 집단으로 비치기 쉽다. 교수들의 파벌은 요컨대 파당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치사한’ 모임이 아니라 ‘고상한’ 모임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물론 허무맹랑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축면이 있다. 교수사회의 파벌은 대내적 결속력의 강도와 대외적 갈등의 심도 양측면에서 정치경제적 세력집단들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수사회에는 파벌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이익이나 권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즉, 교수들이 다른 계층집단보다 겹잖거나 고상해서 파벌이 적거나 갈등이 약한 것은 결코 아니다.

교수사회의 파벌이 이루어지는 원천적 요인은 몇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형성된 이후에 파벌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의 핵

심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직, 신규임용, 총·학장 선출 등 인사관계 쟁점들을 들 수 있다.

가장 널리 퍼져있고 자주 발생하는 파벌 원천은 학내 정치관계에서의 권리·권한 및 그에 관련된 보직의 장악이다. 학과장이나 각종 위원회 위원직에서부터 부총장이나 처장에 이르는 각급 교수보직은 여러 가지 이권을 요리하는 권한을 동반한다. 연구비를 비롯한 각종 이익 내지 혜택은 원칙적으로 전공영역·학과·단과대학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지만, 운영에 따라서는 각급 보직자의 개인적 친숙도에 따라 편중되게 점유될 수 있다.

신규임용은 보직임명보다 빈발하지는 않지만, 파벌형성의 주요한 바탕요인이다. 교수사회의 최초·최초의 집합단위인 학과의 일은 대체로 성원교수의 일반의사에 따라 처리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거기서도 메로 이전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설득과 타협에 따른 합의나 양해에 도달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다수성을 확보하는 쪽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임용이 파벌요인이 되는 것은 학과 등 각급 단위집단에서 보다 많은 수의 교수를 확보하는 그룹이 더욱 큰 결정권 내지 세력을 행사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총·학장 선출은 보직임명이나 신규임용보다 훨씬 드물게 일어나지만, 교수사회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행사이다. 총장은 대학운영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직위인 만큼 포괄적 권한을 지닌다. 특히 주요 교수보직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총장의 몫이다. 단과대학장은 총장보다 훨씬 작은 권한밖에 없지만, 일상적 행정업무처리에서는 비교적 광범한 재량권을 가진다. 총장과 학장의 직위가 어떤 인물들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대학운영의 방식과 내용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만큼 총·학장 선출은 파벌형성의 한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밖에 강좌배정, 학생지도, 연구비, 안식년 휴가, 해외연수 등 각종 사안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또는 이익과 손해가 모두 교수사회의 파벌과 상호합수적 변수가 된다. 다만 이를 변수는 앞서 말한 인사문제에 비해서는 부차적·종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특히 총장의 인격특성과 교육적·정치적 신념 및 인력관리·행정처리 방침 등은 학사운영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변수이다.

요컨대 대학운영에서 파생되는 모든 이해관계가 교수사회에서 파벌이 형성되는 뿌리이며, 이해관계의 중심고리가 되는 모든 행사 내지 사건이 파벌형성의 구체적 계기가 된다.

2. 教授派閥의 存在形態： 경계획정의 기준

대학교수들은 어떤 방식으로 파벌을 이루며 어떤 형태로 그것을 존속시키는가? 血緣, 地緣, 學緣, 권력자와의 친숙성 등 일반사회에서 파벌을 이루는 기준 내지 매개요인은 교수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교수집단의 파벌은 한 두 가지 특이한 점들을 보여준다.

첫째로 혈연과 지연은 각각 그 자체로는 파벌형성의 중심적이거나 주요한 변수 또는 매개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는 교수들이 전통적 가치관·생활관을 많이 탈각했음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지연이나 혈연은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다른 변수들과 겹칠 경우, 그에 따른

파벌을 더욱 결속력있게 만드는 촉매가 된다. 예컨대 의국유학 출신자들의 경우 이웃 학교나 같은 나라, 심지어 같은 대륙에 속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끼리 파벌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는 지연파벌이라기보다 학연파벌의 특수형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연이나 혈연이 지배적인 파벌 변수에 압도되고 마는 미미한 변수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연이나 혈연은 그 자체로는 의미있는 규모의 파벌을 들려 살 울타리가 되지 못하는 까닭에 학연에 실려 나타날 뿐이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득자적 파벌요소로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둘째로 지연은 혈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파벌형성 매개요인이 된다. 예컨대 거의 모든 지방대학에서는 해당대학 출신뿐 아니라 해당지역 출신을 포함하는 지연파벌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형태의 지연파벌은 대개 몇 개의 고교동창 파벌을 연합적 구성요소로 포함한다.

혈연파벌은 지연파벌만큼도 공개화·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혈연파벌은 지연파벌 속에 은밀하면서도 끈질기게 숨쉬고 있다. 지연파벌은 실상 각종 인척계열이 포함되는 넓은 의미의 혈연파벌들의 연대집단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파벌형성의 가장 큰 기준변수가 되는 것은 학연이다. 학연파벌의 결속정도는 교수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교수사회의 파벌현상이 다른 계층집단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다는 점에 비추어 당연하다. 다만 교수사회의 파벌 가운데 학연파벌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학연파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서울대 출신 파벌일 것이다. 서울대 출신 교수집단은 徒弟 양성체계를 갖춘 몇 단과대학의 경우, 그리고 배타적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몇 학과의 경우, 타대학 출신에 대해 결속력 강한 파벌을 이루다. 그러나 나머지의 경우 그들은 어느 교수들보다 위낙 개인주의적이어서 경쟁적 이익단체의 성격을 지닌 파벌을 형성하기 어려울 만큼 탈파벌적이다. 따라서 교수사회에서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파벌규모로 간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역으로 그들은 어

면 의미에서는 개인마다 하나씩의 파벌을 이룰 정도로 파벌지향적이기도 하다.

그밖의 학연파벌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역사가 긴 이른바 일류대학에서는 본교출신이 학원운영의 주요직위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파벌을 이룬다. 그 파벌은 대체로 서울대 출신 집단을 가상적 경쟁파벌로 상정한다. 둘째, 지방대학이나 그밖의 대학에서는 본교출신 교수들만으로 꾸려지는 파벌은 별 영향력이 없다. 그대신 그들과 이런 저런 인연이 있는 인사들과의 연합이라는 형태의 파벌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재직대학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출신대학별 파벌은 있게 마련이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나 대학원의 동문이라는 학연은 자연 등 다른 요인이 결합되지 않는 한 대학학부 동문에 비해 파벌집단으로서의 응집력을 매개·형성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3. 派閥一般의 폐해와 大學社會의 보수성

교수사회에는 위에 말한 혈연·지연·학연 등의 선행요인과는 일단 관계없이 성립하는, 다시 말해 교수 이외의 일반사회에서도 통용되는 파벌형성의 매개 요소가 있다. 기업체에서라면 담당업무나 소속부서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들끼리 쉬 친숙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전공영역이나 소속 학과·계열·대학 등 間주관적·상호주체적 환경요인이 공통되거나 근접해 있는 교수들끼리 일상적 연대가 형성되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한 경우는 보기에 따라 파벌이라기보다 일종의 공동체 또는 1차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적 집단에서 성립되는 안정감도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엄밀하게는 결국 파벌의식의 특수형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총장과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대학행정 주요 결정권자들과의 친숙성은 지연·학연 등의 적극적·능동적 파벌과는 다른 소극적·의존적 형태의 파벌을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대학 바깥의 일반사회에서 상급자와의 관계를 파벌적 끈으로 삼으려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한

파벌에 속한 인사들은 형식절차상 이른바 보스의 영향력에 힘입어 자신의 권익을 쟁기는 從犯의 위치에 있지만, 실질내용으로는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빌미로 상급적 인사와 소속기관 전체를 과행적 운영으로 몰아넣는 主犯의 작태를 자행한다. 대학 바깥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대학 안에서의 파벌을 형성하고자 하는 배거리의 경우도 이와 같다.

대학사회에서 파벌을 형성하는 매개요인 내지 경계획정 기준들은 개별적이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파벌형성의 일반적 매개변수와 교수사회 파벌의 형성변수는 거의 늘 함께 작용한다. 가령 총장의 대학후배이거나 재단이사장 처남의 친구인 교수라면 그 파벌적 관계로 인해 학문적 업적이나 교육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당한 불이익을 부당히 면제받고 부적절한 혜택을 자격없이 누리게 된다. 그만큼 파벌은 해당 사회를 병들게 한다.

파벌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집단의 이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만큼 그것이 속한 사회의 보편적 이익의 실현에 저해요인이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파벌이 집단간 이익쟁취 경쟁에서의 타협과 조화를 통해 상대적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파벌은 개인이나 소수집단을 고립되고 소외된 상태로 내몰지 않고 안정된 正體性 속에 귀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정체성은 소속사회 또는 그 성원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 분파를 베타적으로 포괄하는 상징일 뿐이다. 교수집단의 파벌도 결국 대학의 존재이유이자 교수社会의 공동선인 학문연구와 학생교육 및 사회비판의 자유, 그리고 학원운영의 자주·자율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모든 파벌이 그렇듯이 교수社会의 파벌도 그 모집단사회를 분열시키고 정체시킨다. 파벌은 기본적으로 현존체제를 부정하지 않되, 그 체제의 규범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일고자 한다. 파벌은 가장 건강한 경우에도 공동체적 諸가치의 배분을 불공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 배분의 절차적 원리를 현실 속에서 왜곡시킨다. 파벌은 기존규범을 실질적으로 파괴하되,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체제모형을 모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벌에는 기존의 것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을 통해서만 성립하는 진보지향이 결핍되어 있다. 그만큼 파벌은 일차적으로 소속사회를 보수화하며, 이차적으로 반동화한다. 파벌이 없거나 적은 사회에 비해 파벌이 있거나 많은 사회는 그만큼 상대적 퇴보를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4. 現實變化와 보수, 진보, 그리고 중립

모든 사회구성원은 원천적으로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한쪽을 편들게 마련이다. 대체로 현재의 체제에 만족하는 위치의 사람들은 현상의 존속을 원하게 마련이고,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현상의 타파를 원하게 마련이다. 혼란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의 핵심적 근원은 이익과 손해에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동자계급은 진보적 경향을 지니며, 자신의 노동보다 향유의 둑이 훨씬 큰 자본가계급은 보수적 경향을 지니게 된다.

분석적 사물이해들을 가진 사람들은 위의 말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노동자도 보수적일 수 있고 자본가도 진보적일 수 있다.” 철저히 좌취당하면서도 그런 삶을 주체적으로 감내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으며, 인간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자 자신의 자산을 쓸어붓는 자본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은 극히 예외적이다. 결국 노동자의 보수성과 자본가의 진보성은 대체로 객관적 사태나 주관적 의식 중 어느 한쪽이 왜곡되었을 때에 나타난다. 예컨대 경제·정치·사상의 어떤 수준에서 봉건제적 요소가 강력하게 결속하거나 식민주의세력이 광범하게 침탈하는 경우 민족부르조아의 성장은 그 결속과 침탈의 강도, 즉 그 침탈에 대한 저지·완화의 정도만큼 중요한 진보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예컨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결과가 자본과 경영의 중립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자본가에게 수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는 경우에도 그에 만족하고 지내는 사회, 다시 말해 그만큼 계급관계가 개방적이고 노동조건이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이 절반적으로 보수성을 지닌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실천적 핵심기준은 현재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려 하느냐, 아니면 변혁하려 하느냐 하는 데 있다. 실증주의적 안목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는 그에 대한 주체적·반성적 의식과 판단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회에는 보수와 진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현상유지 또는 현상타파에 나서지 않으면서 일단 이루어진 사태변화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파악된 ‘중립인’에 해당하는 전형적 계층들이 있다. 공무원은 정권의 향배와는 무관히 국가기관의 행정실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임무를 진다. 과학자는 사회역사적 용도나 기능에 관계없이 ‘사실’과 ‘진리’만을 탐구한다. 기술자는 과학이론의 기계적 적용이나 창의적 응용을 통해 사물을 조작한다. 교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회변동의 형태나 수준과는 무관히 객관적으로 승인된 이론적 진리만을 전달한다. 언론인은 계급·계층간 갈등이나 투쟁에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만을 전달하며, 때로 양쪽 모두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도 한다. 교수 등 학술인은 있는 사실과 있을 수 있는 사실을 두루 탐구하고 그 결과를 현상의 유지나 타파를 지향하는 당사자들에게 공급하고 때로 자신의 주장을 공표하되, ‘학자’의 자격으로 현실투쟁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재판관 등 법조인은 개인과 단체 및 공공기관의 행위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각각 또는 서로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편규범·객관규범으로 확립된 법규에 따라 공평하게 심리·판결하는 최종적 권위를 보유하되, 그 심판의 내용주체가 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일은 없다.

5. ‘中立的 立場’의 현실적 불가능성

이들 ‘중립적’ 인사들의 사회역사적 기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갈래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말한 실증적 관점에서는 이들의 합리적·효율적 지식·기술은 짧게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바탕이 되며, 걸개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변혁을 위한 의식적·조직적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계각층 사회성원, 특히 각분야 전문인들이 맡은 바 일을 꾸준히 수행하고 창조성을 발휘해 나감으로써 사회진보·역사발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정치적 지배관계의 逆轉 또는 지배권력의 계급·계층간 교체는 그 자체로는 사회진보와 무관하며, 노동의 양적 축소와 질적 고도화 및 경제적·경제의적 향유의 증대 등 삶의 내용에서의 성장과 풍요화가 발전 내지 진보의 지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적 비판 또는 실질변증법으로 필자가 부르는 맑스적 관점에서 보면 ‘중립적’ 인사들의 기능수행에 담긴 합리성과 효율성은 단면적·미시적으로는 사회적 생산과 개인적 소비를 증대시키지만, 지속적·거시적으로는 역사발전을 오히려 저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전문적 지식인·기술인을 중심한 각 계층 인사들의 일상적 기능수행에 수반되는 자연발생적 진보만을 공경하고 정치적 강령의 공동실천을 통해 목적의식적으로 창출하는 발전을 부정하는 경향분석적·실증적 사회관·역사관은 현실의 역동 속에서는 일종의 기만을 유포한다. 사회진보의 실증적 지표를 높이는 일, 즉 삶의 내용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하는 일도 실제로는 향유 자체를 증대시키는 경제주의적 방식에 매달리기보다 사회의 전반적 체제 내지 구조를 빼내지우는 정치적 관계를 변혁해냄으로써 훨씬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그러므로 비관적 관점에서 보는 한 앞서 말한 ‘중립적’ 위치나 기능이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다.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보수진영과 현상파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의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다면, 결국 실질적으로는 현상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권력적 계급관계의 변동이나 전반적 사회체제의 변혁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에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찬성하는 것이 된다. 형식상 중립적 계급위치를 점유하며, 명분상 중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인·기술인은 사실상 기득권세력을 응호하는 보수의 편에 서 있으며, 그들 스스로 일단의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각종 사회갈등에 대해, 특히 체제수준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쪽과 방지하려는 쪽 사이의 정치적 대립에 대해 중간계급이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제 3의 심판자’ 또는 ‘공평한 조정자’로서의 기능은 실제로는 지배계급과 중간층 자신이 공유하는 기존의 이해관계를 안정시키고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되는 셈이다. 계급사회에서 ‘중립성’이라는 명분에 실려 이루어지는 중간층의 사회정치적 기능은 분석적 의미에서 세 갈래로 나타난다. 첫째, 중간층의 체제비판은 억압·착취의 지배현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비판주체로서의 중간층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시킨다. 둘째, 중간층의 비판은 그 비판을 형식상 포용하는 정치체계의 정당성을 높여주고 그 실질내용인 경제적 지배관계를 안정화한다. 셋째, 단계적 진보를 역설하는 중간층의 점진주의는 근본변혁 지향의 사상과 행동 및 그 주체 계급을 두루 중립화함으로써 체제수준의 변화를 지연시킨다.

요컨대 중간층은 그 자신 지배체제의 상층으로 진입하려 하되, 체제의 하층으로부터 떠밀어 올라오는 계급이동·사회변혁의 힘을 막아냄으로써 경제·정치·사상의 각 수준에서 기존체제 수호를 위한 다방면적 바리케이드 기능을準기득권층적 위치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6. 代表的 保守集團 :

법조계·언론계·학계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 중립계층’이라는 이름 속에 보수적인 태도를 채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으로 세 가지 직업계층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인, 언론인, 대학교수가 그들이다. 이들 세 집단은 지금껏 역사적 전통과 현실적 관행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생활의 물적 조건으로 볼 때, 이들은 적어도 정기봉급수령자 가운데서는 상위 3~5% 안에 들 정도의 고소득자이다. 이들은 기존체제에서의 지배권을 누리는 핵심에 속하지는 않으나, 그 핵심 세력으로부터 심각한 탄압을 받지는 않는다. 이들 또한 때로 금권이나 정권에서 오는 압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곱다시 감

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신념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 구속되어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 1,300여 명 중 70% 이상이 노동자와 대학생이다. 그에 비해 교수, 기자, 판사·검사·변호사 가운데 현재 복역중인 양심수는 한 명도 없다. 이는 기자가 노동자만큼 민주노조운동에 열심히 투신하지 않았고, 교수가 학생만큼 민주화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보다 명백히 이 통계가 직접 드러내는 것은 교수나 기자란 설사 투쟁적 운동에 적극적으로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에 대한 편파적이고 왜곡된 해석에 입각한 권력측의 사법적 탄압을 멀리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강력한 물리적 탄압을 당하는 노동자나 학생에 비할 때 기자, 변호사, 교수는 거의 전연 탄압받지 않는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물론 교수, 변호사, 기자 가운데도 악랄한 활동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판사조차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전문적 지식인계층에 대한 탄압은 책임용 제의, 좌천, 사생활 뒷조사, 취재원 접근제한 등 비교적 우회적·간접적인 형태로 행해지며 그것도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산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는 육체적 고문이나 생업박탈 등 직접적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데 비해 지식인운동 내지 중간층운동에 대한 탄압은 절적·양적으로 훨씬 경미한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탄압은 주로 투쟁실천 이전의 사전 방지용 위협에 그치는 것이 상태이며, 행위결과에 대한 사법적 치리나 구속·수감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이들은 설사 적책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식구들의 오늘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들이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계층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상 보수진영의 주요 구성인자인 까닭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들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곧 지배집단으로부터 일종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보수적이 된다. 기존체제의 정당성 여부는 그들에게 의문의 대상으로 떠

오르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의 현재상태를 유지하려는 쪽과 개혁하려는 쪽 모두에 대해 때로 중립적 조정자 노릇을 하지만, 그 ‘조정’이란 체제의 기본구도를 ‘주어진 것’ 또는 ‘불변의 것’으로 놓아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은 체제운영의 중심주체, 곧 지배세력으로 발돋움하거나 적어도 일정수준의 지배력을 분점한다. 지배권력의 분점 내지 체제운영에의 참여——이것이 바로 중간계층에서 드러나는 보수성의 깊은 뿌리이다. 이렇듯 중간계급(眞眞 부르조아) 상층은 雜지배의식을 지닐 만큼 보수적이 된다. ‘지켜야 할’ 권리와 이익을 움켜쥔 집단은 그 권리의 질량에 비례하는 만큼 갈래진 분파를 갖게 된다. 파벌이 형성되는 토양과 자양은 단적으로 말해 사회경제적 권리에 있다. 교수사회와 파벌도 원천적으로는 집단이익의 확보를 위해 형성된다.

7. 派閥을 깨뜨리는

새로운 파벌에의 요구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과는 상관없이 ‘파벌’의 의미를 개방적으로 해석할 때, 교수사회의 파벌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이다. 원리적 학문관 또는 방법적 입장, 교육관, 취미, 특기, 정서적 기질 등 각종 주관적 개성 요소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꾸려가는 다양한 서클까지도 넓은 의미에서는 파벌에 속한다. 이러한 의미의 파벌이라면 협소한 이기성에 매몰된 반사회적·탈규범적 보수집단으로 매도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대학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가치를 실현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기보다 족진요인이 되는 진취적인 교수모임도 일종의 파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교육부나 일부 어용적 지식인단체에서는 이들 ‘파벌 아닌 파벌’로서의 진보지향 교수집단에 대해 “교수사회·대학사회를 분열시키는 편협한 독단적 지식인”이라거나 “학생지도를 맡기기에는 안심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교수”라는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해야 할 ‘문체인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공동체의 건강한 규범과 관련하여 볼 때,

그것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쪽이 그것을 건설하고 재정립하려는 쪽에 대해 ‘거꾸로 든 봉등이’를 휘두르는 꼴이다.

대학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총장, 재단, 교육부, 청와대 등 기득권세력은 거의 예외없이 보수적 파벌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다. 그들 세력 집단은 현체제와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키우는데에 그 파벌을 이용한다. 파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들 기득권세력을 무조건 응호하고 그에 충성을 바치는 의존적 보수파벌이다. 특히 현단계 한국사회와 같이 각종·각급 사회관계를 종체적으로 압축하여 대표하는 정치 권력관계가 민주화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현실에서는 대학을 포함한 공기관의 합법적 대표 또는 首長부터가 보수파벌을 거느리는 동시에 상급 보수파벌에 종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 보수파벌의 부당한 전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적인 세력이 새로운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수준의 사회에서도 일반이익에 반하는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파벌은 없어야 한다. 대학사회에서도 또한 같다. 그러나 그러한 파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교육 민주화와 학원자율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공유하는 ‘파벌 아닌 파벌’로서의 진보적·양심적 교수집단이 꾸준하고 성실한 실천을 쌓아갈 때에만 형성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들 개혁적 교수집단은 관행적 의미의 ‘파벌’이 결코 아니다. 이들은 교수사회의 잘못된 파벌현상을 타파할 뿐 아니라 대학사회의 새로운 규범문화를 배양함으로써 균원적으로 올바른 대학의 삶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탈파벌적 개혁지향 교수들이 수년에 걸쳐 펼쳐온 전국 수준의 공동실천이 있다. 이들의 실천적 노력은 대학행정당국과 재단, 그리고 교육부와 정권당국이 관성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해 온 대학행정의 권력추종적 어용화 및 비판적 대학지성의 무기력화를 거부하는 방향을 견지해 왔다.

진보적 양심세력을 형성하는 교수들의 실천을 압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실질적 합법기구로 기능하고 있는

교수협의회·교수평의회·평교수협의회이다. 교수평의회 등 대학별 교수대의기구는 학원의 경상적 운영을 민주화·자주화하고, 연구·교육·학습·사회비판 등 대학의 존립목표를 실질화해 나가고 있다. 총·학장 직선을 비롯한 학원과 교육의 제도적 민주화·자율화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교수대의기구의 합법화·공식화를 통해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8. 大學 改革을 위한

주체적 자세의 확립

금년초 노태우 대통령도 언명한 바 있듯이 “이제 대통령에서 국민학교 1학년 학급반장에 이르기까지 직접선거로 뽑히는 시대가 되었다.” 30여 년 군부에 장악되어 온 정치권력이 이제 그 중심부에서부터 우리 시대 각계각층 사회집단의 민주화를 어길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국면에서 대학총장이 교수들의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말한다: “대학사회에서 총·학장을 직선하는 것은 곤란하다. 교수들이 권력이나 이익의 맛을 알면 고유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교수는 연구와 강의라는 본업에 충실헤야 하고, 행정권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는 학원이란 이전에 눈이 어두운 정상배나 출부들 또는 그들과 한 페거리리를 이룬 어용적·하수인적 인사들, 한마디로 보수파벌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일 수밖에 없다. 기득권에의 패배를 수용하고 자기 주체를 포기하는 태도는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대학인은 이제 조선시대의 딸깍발이로만 살 수는 없다. 서로 경쟁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대학의 권위와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적인 기득권 경제·정치세력의 손아귀로부터 대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대학의 중심주체인 교수들은 결의를 모으고 힘을 뭉쳐야 한다. 권력과 이전에 찌든 ‘어두운 파벌’을 타파하는 교육자주화의 ‘밝은 새 파벌’을 형성하여 민주학원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

교수평의회로 대표되는 대학운영의 새로운 조직적 주체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어울리셔는 안 된다. 대학사회를 왜곡해 온 보수적 파벌현상을 청산하고,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비판적 학원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양심적인 진보지향 교수집단이 더욱 적극적인 실천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진보교수집단은 예컨대 총장후보 선출에서 성실하고 진취적인 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들 자신 또한 주요 보직을 맡아 학원쇄신에 직접 헌신할 각오를 지녀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개인적 손실을 감내하고 총·학장이 되어 학원민주화·교육자주화의 제도적 중심주체로 역할할 만한 인물을 배출하기도 해야 한다.

총·학장 선출이 파벌을 야기하거나 조장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총·학장 선출과 관련하여 각종 파벌이 힘을 쓴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장직선이 파벌발생의 원인인 것은 결코 아니다. 원래 응답에서 숨쉬고 있었던 파벌이 총장직선의 실질적 제도화를 계기로 양달에 까지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금품수수나 간접적 대립 등 총장선출과 관련된 부작용은 오히려 ‘결과’이며, 그 ‘원인’은 자연과 학연으로 매개된 ‘파벌’이요 그 보수성이다. 그러한 이권 추구 보수파벌은 총장직선 이후로는 외부에 대해 더욱 스스로를 은폐시키지만, 소규모 동호인

집단의 형태로나마 평소에도 존속하게 마련이다.

곰팡이는 햇볕에 노출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 있다. 각종 이해파벌을 밟고 넓은 탁 트인 마당에 집합시켜야 한다. 거기서 민주와 자율에 바탕한 공동이익·공동권리의 普遍善이라는 따가운 햇살로 조임으로써 파벌의 곰팡이를 말리 없애야 한다.

이제 대학은 대학인이 관리해야 한다. 대학이 더 이상 돈이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대학인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그 중에서도 교수집단은 종속적·식민적 성격의 각종 연출과 서열이 뒤엉킨 보수적 파벌을 깨뜨리고, 학원을 자주화하고 시대사회를 발전적으로 각성시키는 비판적 실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법조인 및 언론인과 함께 시대사회에 가장 큰 빛을 지고 있는 교수들은 그만큼 과감히 기득권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요구를 극복하고 성실히 부채상환의 실천에 임해야 한다. 혈연을 함께하는 폐거리(門閥; 親族姻戚曰黨), 지연을 함께하는 폐거리(地閥; 鄉黨), 학연을 함께하는 폐거리(學閥; 同門曰朋), 이권을 쓰는 폐거리(相助匪非曰黨) 등 — 한마디로 보수적인 朋黨으로서의 파벌은 타파되어야 한다. 보수파벌의 청산을 위해 비판적 진보세력으로서의 교수들은 도리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께하는 실천적 집단(同志曰友)을 이루고 키워가야 한다. ■